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한정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949

발의연월일: 2025. 3. 14.

발 의 자: 한정애·추미애·이병진

박희승 • 홍기원 • 김기표

주철현 · 조인철 · 김동아

정일영 · 문진석 · 이학영

송옥주·강준현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·도지사의 의견을 듣고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.

그런데 세계 최대 규모로 개발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공업용수 및 전력수급 부족이 현실화될 위기를 맞고 있어, 산업단지개발계획과 국가수도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연계될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음.

이에 국가산업단지 지정 시 국가수도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연계할 것을 명시함으로써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6조제3항).

법률 제 호
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조제3항 전단 중 "한다"를 "하며,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

경우에도 또한 같다"로 하고,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경우 산업단지개발계획은 「수도법」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 본계획 및 「전기사업법」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연계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6조(국가산업단지의 지정) ①	제6조(국가산업단지의 지정) ①		
• ② (생 략)	· ② (현행과 같음)		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	③		
는 제2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			
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			
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·도지			
사의 의견을 듣고, 관계 중앙행			
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	<u></u> <u>ঠ</u> }		
다.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	며,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		
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	<u>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</u> . <u>이</u>		
	경우 산업단지개발계획은 「수		
	도법」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		
	<u>기본계획 및 「전기사업법」</u>		
	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		
	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		
④ ~ ⑧ (생 략)	④ ~ ⑧ (현행과 같음)		